

Fi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상품명 | • Fi 정기예금 (대면,비대면 / 단리,복리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입대상 | 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입금액 | • 10만원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입기간 | • 1개월 이상 ~ 24개월 이하 (일단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가입채널 | 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SB톡톡+,다음디지털뱅크Fi)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이자지급시기 | 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• 매월이자지급식 (단리식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 |  |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제한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이자율 (24.12.05 현재) | 기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(재연장)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[연, 세전]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약정이율 (연평균수익률)</th> <th>1개월</th> <th>3개월</th> <th>6개월</th> <th>12개월</th> <th>13개월</th> <th>24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면</td> <td>2.20%(2.20%)</td> <td>2.30%(2.30%)</td> <td>2.50%(2.51%)</td> <td>3.45%(3.50%)</td> <td>3.30%(3.35%)</td> <td>3.30%(3.40%)</td> </tr> <tr> <td>비대면</td> <td>2.20%(2.20%)</td> <td>2.40%(2.40%)</td> <td>2.60%(2.61%)</td> <td>3.45%(3.50%)</td> <td>3.30%(3.35%)</td> <td>3.30%(3.4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약정이율 (연평균수익률)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2개월 | 13개월 | 24개월 | 대면 | 2.20%(2.20%) | 2.30%(2.30%) | 2.50%(2.51%) | 3.45%(3.50%) | 3.30%(3.35%) | 3.30%(3.40%) | 비대면 | 2.20%(2.20%) | 2.40%(2.40%) | 2.60%(2.61%) | 3.45%(3.50%) | 3.30%(3.35%) | 3.30%(3.40%) |
| | 약정이율 (연평균수익률)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2개월 | 13개월 | 24개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대면 | 2.20%(2.20%) | 2.30%(2.30%) | 2.50%(2.51%) | 3.45%(3.50%) | 3.30%(3.35%) | 3.30%(3.40%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비대면 | 2.20%(2.20%) | 2.40%(2.40%) | 2.60%(2.61%) | 3.45%(3.50%) | 3.30%(3.35%) | 3.30%(3.40%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만기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 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연0.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경과기간 | 이 율 | 1개월 이내 |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 | 1개월 초과 | 연0.1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과기간 | 이 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개월 이내 |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개월 초과 | 연0.1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만기이자 계산방법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이자 계산식</th> </tr> <tr> <th>월 단위</th> <th>일 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리식</td> <td>원금×이율/12×월수</td> <td>원금×이율/365×일수</td> </tr> <tr> <td>복리식</td> <td>원금×{(1+이율/12)ⁿ-1} (n은 경과월수)</td> <td>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구 분 | 이자 계산식 | | 월 단위 | 일 단위 | 단리식 | 원금×이율/12×월수 | 원금×이율/365×일수 | 복리식 | 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 |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 | | | | | | | | | | |
| 구 분 | 이자 계산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월 단위 | 일 단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단리식 | 원금×이율/12×월수 | 원금×이율/365×일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복리식 | 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 |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원천징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중도해지 이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일부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을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미만</td> <td>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</td> </tr> <tr> <td>1개월이상 ~ 6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0%</td> </tr> <tr> <td>6개월이상 ~ 9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55%</td> </tr> <tr> <td>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60%</td> </tr> <tr> <td>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</td> <td>기본이율 × 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예치기간 | 이 율 | 1개월미만 | 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 | 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50% | 6개월이상 ~ 9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55% | 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60% | 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70% |
| | 예치기간 | 이 율 | | | | | | | | | | | |
| | 1개월미만 | 신규일의 보통예금 금리 | | | | | | | | | | | |
| | 1개월이상 ~ 6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50% | | | | | | | | | | | |
| | 6개월이상 ~ 9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55% | | | | | | | | | | | |
| 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60%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 | 기본이율 × 70%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위법계약 해지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예금 해지 시 불이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세제혜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할해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만기해지 사전신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의 자동재예치 가능 -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 - 재연장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자동재연장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연계·제휴 서비스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 | | | | | | | | | | | | |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예 아니오 ☞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